

제336회 시의회 정례회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#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2026. 6.

도시공간본부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도시공간본부

총 1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설치기준 개정 건의	시설계획과

# 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설치기준 개정 건의 (시설계획과, '26. 4. 1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현 황</b></p> <p><b>【시설현황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내 유통업무설비 총 9개소 설치</li> <li>○ 설치 후 평균 42.3년 경과, 정비 필요</li> </ul> <p><b>【제도현황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(약칭: 도시계획 시설규칙)에 유통업무설비는 세부시설(유통·하역·저장 시설)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</li> <li>※ '92년 「도시계획시설규칙」 개정 사항 : (개정 전)세부시설 부분 설치 ⇒ (개정 후)모두 설치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계획시설규칙」 개정 전 설치되어 현행 세부시설 설치 기준 미충족 시설 5개소 존재 (하역시설 미설치)</li> <li>○ 도심지 및 주거지 입지여건 상 대규모 하역시설 설치 불가능</li> <li>○ 현행 세부시설 설치 기준 미충족 시, 증·개축, 신축 등 시설 정비 불가능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계획시설규칙」 제62조, 유통업무설비의 설치기준을 현 도심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도심지 유통업무설비의 정비 여건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역시설 종류에 소규모 생활물류시설 추가</li> <li>- 세부시설을 임의시설로 규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관련 규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2조</li> </ul>	<p>(국토교통부)</p>